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easylaw.go.kr



글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easylaw.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는 **2025년 1월 현재 서술형 279건, 사례형 18건 등 총 297건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 정보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웹페이지 http://easylaw.go.kr](http://easylaw.go.kr), [모바일앱 Smart 생활법률](#)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약류중독자

Q 최근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이른바 '신종 마약'이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을까요?

A 네, 우리나라에서는 신종 마약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종 마약이라 하더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되기 때문에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시마약류의 지정

■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물질 등"이라 함)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험이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임시마약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의2제1항).

-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 임시마약류에 대한 정보는 <마약류폐해 알리미(antidrug.drugfree.or.kr) - 마약류 정보 - 임시마약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임시마약류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의2제2항).

-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아래 4.를 제외한 모든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제5의2제3항 및「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1.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
2. 임시마약류의 명칭
3. 1군 임시마약류 또는 2군 임시마약류의 구분
4. 임시마약류 지정의 예고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 예고에 관한 사항
5.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및 공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기존의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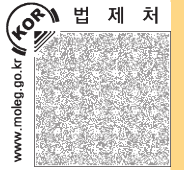
A 네, 보호관찰처분을 받으면, 법원의 감독 하에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그 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는 몇 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보호관찰”이란?

-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보호관찰 참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다음의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따로 과(科)하는 경우로 한정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따로 과(科)하는 경우로 한정함]

보호관찰 대상 및 기간

-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하 “마약류사범”이라 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 및 제4항).

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보호관찰 대상자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보호관찰의 종료

-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면 종료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등에도 종료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Q

마약류 사범으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지만, 마약 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본인이 치료보호기관에 직접 치료보호를 신청하여 마약류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란?

- “치료보호”란 마약류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의 의뢰·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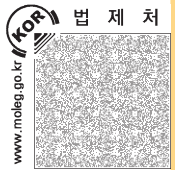
- 검사는 마약류중독자 또는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하 “중독자 등”이라 함)에 대해 치료보호를 할 필요가 있거나 중독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중독자 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의뢰해야 합니다(「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1항).
- 또한, 중독자 등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은 중독자 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4항 전단).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판별검사 의뢰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중독자 등에게 판별검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 전단·제8항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0조제1항).
-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판별검사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 후단 및 제11항).

치료보호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간을 정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 전단·제8항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3조).

- 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 후단).
-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해 중독증상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를 해야 하며,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1항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4조).

Q

마약 중독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후, 이제 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중독자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마약류중독자는 함께한걸음센터 및 지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한걸음센터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핵심 인프라인 “함께한걸음센터”를 통해 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출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www.drugfree.or.kr) - 중독재활센터/상담 - 중독재활센터 - 중독재활센터 참조].
- “함께한걸음센터”는 전국 17개소가 운영 중이며, “한걸음1342”를 통해서 24시간 전화상담(☎ 1342)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약 등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
-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

-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용대상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 정보보털-정신건강관련기관-기관 소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참조].
 - 지역사회 내 마약중독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중독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
 -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중독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독자
 - 그 밖에 중독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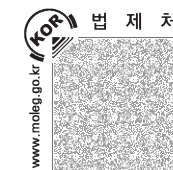
환자가 내원하여 펜타닐(정제·패치제) 처방을 요구하는데, 그동안 펜타닐을 과다 복용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이 경우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A

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투약내역을 조회한 후 과다, 중독 처방 등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마약류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의 형태만 해당)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 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본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란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자목).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하여 마약류의 취급·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1조).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의료용 마약류를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처방·투약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처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한 제공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3조 본문 및 별표).

구분	세부 내용	비고
효능군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비암성 만성통증에 한함
	진통제[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항불안제(클로르디아제폭시드, 맥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	
성분	졸피뎀(최면진정제)	비암성 만성통증에 한함
	프로포폴(마취제)	
	펜타닐(진통제) ※ 경피흡수제(패치제)에 한함	
	메틸페니데이트(ADHD치료제)	

키워드 마약, 신종마약, 마약류, 임시마약류, 마약범죄, 마약류중독자, 마약중독자, 보호관찰, 치료보호, 판별검사, 함께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의료용마약류, 오남용예방